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특수영양식품 상표**

(Labelling of foods for special nutrient)  
(중화인민공화국경공업부 1996.12.17 승인1998.9.1시행)

**1.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 본 표준은 특수영양식품 상표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규정한다.
- 본 표준은 영유아 식품·영양강화식품·영양소 조정 식품 (예를 들어 저당식품·저나트륨(Na) 식품·저 단백질 곡물식품)의 판매용 포장 상표에 적용한다.

**2. 인용 표준**

GB 7718 식품 상표 통용표준

**3. 용어의 정의**

3.1 특수영양식품

식품의 천연 영양소의 성분과 함양 비율을 변화시켜 일부 특수한 사람들의 영양 수요에 적응시킨 식품을 지칭한다.

3.2 영양소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물질로서 인체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는데 쓰이는 것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크게 단백질·지방·탄수화물·광물질과 비타민 다섯 종류로 분류한다.

3.3 기타 용어의 정의

GB 7718의 3.1조부터 3.8조까지와 동일 함.

**4 기본 원칙**

특수영양 식품의 상표는 GB 7718 제4장 규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4.1 제품에 품질 보존 기간 내에 보장할 수 있는 열량 수치와 영양소 함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 4.2 이하 내용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4.2.1 모 종의 질병에 대한 “예방” 혹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 4.2.2 “젊음 회복” “수명을 늘이고 장수” “백발을 검게 함” “빠진이가 새로 남” “항암치료” 혹은 기타 유사 용어.
  - 4.2.3 “조상전래 비방” “보양식품” “건강미용식품” “궁정식품” 혹은 기타 유사 용어.
  - 4.2.4 식품명칭 전후에 약물명칭 혹은 약물도형, 치료효과를 암시하는 명칭, 보건 혹은 기타 유사한 작용을 덧붙이는 것.

## 5 상표의 기본내용

### 5.1 식품명칭

- 5.1.1 GB 7718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명칭 표시.
- 5.1.2 제 3.1조 규정의 식품에 적합하고 식품명칭에 식용대상을 표기하여야 한다.

### 5.2 배합 원료표

- 5.2.1 GB 7718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배합원료표를 표기한다.
- 5.2.2 만약 한 종 혹은 여러 종 원료와 보조재료를 강조할 시 반드시 백분율(%)(질량 백분율 혹은 체적 백분율)로 표기하여야 한다.

### 5.3 열량

부록 A(보충 건)에 의거 해당 특수영양식품의 열량을 표기한다.

### 5.4 영양소

부록 A(보충 건)에 의거 해당 특수 영양 식품 중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 · 비타민 · 광물질 · 미량원소의 함량을 표기한다.

### 5.5 순합량 및 고체형태물

GB 7718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 건) 순합량 및 고체형태물의 함량을 표기한다.

### 5.6 제조자 ·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GB 7718 제 5.4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자 ·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한다.

### 5.7 허가번호

GB 7718 제 7.1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분리 포장) 허가번호를 표기한다.

### 5.8 날짜 표기 및 저장 지침

GB 7718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일자 · 품질보존기간 · 보존기간과 저장 수칙을 표기하고 필요시 이하 내용을 표기한다.

- 5.8.1 만약 개봉 후의 특수영양식품의 영양가치와 혹은 감각기관 느낌 및 저장조건과 관

련하여 저장조건을 표기하여야 한다.

5.8.2 만약 개봉 후의 특수영양식품이 원래 포장용기에 보존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5.9 식용방법

GB 7718 제 7.2조의 규정에 의거 표기한다.

#### 5.10 품질등급

GB 7718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을 표기한다.

#### 5.11 제품표준번호

제품의 국가표준·업종표준 혹은 기업표준의 고유번호와 순번을 표기한다.

### 6 기본 구비사항

GB 7718 제 8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 : 해당 용기 최대 표면적이 10㎤보다 작을 시 5.2, 5.7과 5.9에서 5.11조 까지의 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 부 록A

### 식품 중 열량과 영양소 상표 표기방법 (보충 전)

본 부록은 식품의 열량과 영양소의 상표 표기에 적용한다.

#### A1 열 량

A1.1 100g 혹은 100ml 특수영양식품의 열량을 나타내거나 1회 식용의 정량식품 중의 열량을 제안

A1.2 열량은 kJ표시하거나 혹은 kJ(××㎤상당)로 표시

A1.3 열량의 계산

탄수화물	17kJ/g 혹은 17 kJ/g (4kcal/g 상당)
단백질	17kJ/g 혹은 17 kJ/g (4kcal/g 상당)
지 방	38kJ/g 혹은 38 kJ/g (9kcal/g 상당)
에틸알코올(주정)	29kJ/g 혹은 29 kJ/g (7kcal/g 상당)
유기산	13kJ/g 혹은 13 kJ/g (3kcal/g 상당)

#### A2 영양소

##### A2.1 단백질

A2.1.1 100g 혹은 100ml 특수영양식품의 단백질 함량(g)을 나타내거나 식품 중에 1회 식용 정량에 해당되는 함량(g)을 제안

A2.1.2 아래 식에 따라 단백질량을 계산한다.

단백질 량 = 카이씨(凱氏)정량 질소법으로 계산한 총질소량×6.25

식 중 6.25 : 일반 환산계수로 해당 식품의 제품표준 혹은 분석방법에 또 다른 환산계수가 있으면 규정된 지수에 따라 환산하여야 한다.

##### A2.2 지 방

각 100g 혹은 100ml 특수영양식품 중 지방 함량(g)을 표기하고 또한 식품 중 식용 정량에 해당하는 1회 함량을 추천한다.

##### A2.3 탄수화물

A2.3.1 각 100g 혹은 100ml 특수영양식품 중 탄수화물의 함량(g)을 표기하고 또한 식품 중 식용정량에 해당하는 1회 함량을 추천한다.

A2.3.2 만약 탄수화물의 유형(類型) 표기가 필요하다면 아래 방식을 적용한다.

각 100g 혹은 100ml 중 탄수화물××g, 이 중 ××당 ××g.

A2.4 비타민

각 100g 혹은 100ml 특수영양식품 중 비타민 함량(mg,µg 혹은 국제단위)을 표기하고 또한 식품 중 식용정량에 해당하는 1회 함량을 추천한다.

예 : 비타민B1, 비타민B2,비타민C는 mg,혹은µg 표시

비타민A, 비타민D는 국제단위로 표시

A2.5 광물질 및 미량원소

각 100g 혹은 100ml 특수영양식품 중 광물질 및 미량원소의 함량(mg,혹은µg) 표기하고 또한 식품 중 식용정량에 해당하는 1회 함량을 추천한다.

부가설명

본 표준은 전국식품공업표준화기술위원회가 제출하였다.

본 표준은 경공업부·상업부·농업부·국가상검(商檢)국·위생부·중국 표준화 및 신식 분류 편마(編碼)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직한 입안팀이책임 입안하였다.

본 표준 주요 입안자는 두평(杜朋)·리즈창(李志強)·페이산(裴山)·쉬리우(許榴)·왕정(王征)·리우쿠이(劉奎)·하오위( 煜)·리홍빙(李紅兵)·짱화잉(張華瑩)이다

본 표준은 FAO/WHO 식품법규위원회 (CAC)CODEXSTAN146-1985《포장을 준비하는 특수용도 식품 상표와 성명의 표준》을 참조하여 인용하였다.

주 : 기술감독국 국제 상표 관련문서 (1993) 제069호 국가표준에 의거 제1호 서식을 개정하고 기술감독국 국가상표 관련문서(1994) 084호 국가표준 제2호 서식과 (94) 기술감독국 상표 관련문서 제 069호를 개정한다.